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란?

1등급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국제표준 ISO/IEC 25023, ISO/IEC 25051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GS인증의 법적 근거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KTC의 GS인증 분야는?

- 우리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521호(2021.5.18.)’에 따라 신규 GS인증기관으로 지정(2021.5.18.)되었으며,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음과 같이 5개 분야입니다.
 - 인증 대상 : 시스템관리SW, 정보보호SW, 기업관리SW, 산업용SW, 임베디드 응용SW
 - 품질인증 등급 : 1등급

GS인증 서비스 개시일 및 신청 방법은?

- 인증 서비스는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6월 중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 GS인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GS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http://www.ktc.re.kr/> 고객센터>신청서양식>3.정보보안 ‘클릭’)
 - 이메일 신청 : gs@ktc.re.kr

GS인증 절차는?

- 다음과 같이 GS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서 접수 및 계약이 진행됩니다.
- 계약 이후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GS인증시험이 수행되며, GS인증시험 결과에 대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GS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준비 신청	GS인증 시험	GS인증
구비서류 준비	GS인증 시험자배정	인증 심의 위원회 개최
GS인증 신청서 제출	GS인증 시험	인증서 발급
GS인증 상담 및 일정 협의	품질평가 보고서	인증정보 등록

GS 인증 제도 혜택은?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익계약 지원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수익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를 위해 제3자단가계약 신청 시 필수 요건으로 지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2점) 부여

문의

정보보안센터 방지호센터장 031-428-3763 jhbang@ktc.re.kr

정보보안센터 권지영연구원 031-428-3776 jykwon@ktc.re.kr